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7. 7 선고 2021가단816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(소송구조)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

담당변호사 임형태

변 론 종 결 2022. 6. 16.

판 결 선 고 2022. 7. 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8. 2. 접수 제33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가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2963 기타(금전)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. 8. 9. 'C는 원고에게 87,514,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,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나.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2021. 8. 2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8. 2. 접수 제33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는 위 1. 가.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, 자신의 행위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망 D, 망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(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81667)을 제기하자 피고의 지분을 높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하여 C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일 뿐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원고와 C의 조카이고, C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가족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허정룡

별지

목록

부동산의 표시

1. [토지] 전라남도 순천시
 대 126㎡
 중 공유자 지분 2240분의 266

2. [건물] 전라남도 순천시 지상
 [도로명 주소] 전라남도 순천시
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
 1층 76.79㎡
 2층 76.79㎡
 중 공유자 지분 2240분의 266

3. [토지] 전라남도 순천시
 대 44㎡
 중 공유자 지분 122분의 14

